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21955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 재판경과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2195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3251 판결

### 전 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판결 선고 2016. 7. 29.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나1325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이 유

1. 이 사건 1, 2, 3 토지의 원소유자가 Q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에 관한 기재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농지분배 당시에는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4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분배농지부에 이 사건 1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피보상자가 Q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1,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에 관한 보상신청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그 소유자가 Q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Q에게 이전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닌데도, 원심이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을 오해하여 Q의 소유권 취득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Q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 사건 1,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원심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뿐 아니라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기재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Q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1,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원소유자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농지분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중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은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登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가 그 농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서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경우, 원소유자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바 없어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의 전자에게로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가 소유권 관련 공부의 멸실 전에 원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796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 토지는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Q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소유자인 Q가 소유권 관련 공부가 멸실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Q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이 사건 2, 3 토지가 몽리농지에 부속하는 토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어느 토지가 몽리농지에 부속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와 몽리농지의 위치·형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토지가 몽리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2441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대가의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Q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가 다른 분배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몽리농지에 부속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호적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호적부의 기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8. 9. 29.자 2006마883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1, 2, 3 토지의 보상 관련 서류에 원소유자로 기재된 Q의 한자 성명과 본적이 원고의 선대 Q의 제적등본 기재와 일치하고, 이 사건 5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 L가 1943. 3. 19. I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L의 주소가 원고의 선대 Q와 같고, I의 한자 이름과 주소가 Q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아버지 I의 그것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는 원고의 선대 Q의 창씨개명한 성명 O를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1, 2, 3 토지로 분할되기 전 토지의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원소유자와 이 사건 5 토지의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는 모두 원고의 선대 Q라고 판단한 다음, Q의 제적등본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Q의 제적등본에 호적을 재제한 경위가 시간적 순서와 달리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어머니의 본적지로 지목이 전인 장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기재일 당시에 사용되지 않았던 지역명이 사용되거나 관련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그 기재가 수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적등본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고, 그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는데도, 원심이 Q의 호적이 작성된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제적등본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종전 소유자가 모두 원고의 선대인 Q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Q의 호적은 한국전쟁 등으로 멸실의 우려가 있어 수회 다시 조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호적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호적에 기재될 내용을 축약하여 기재하거나 오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호적부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